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1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918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황창하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노208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포괄일죄 성립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0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3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08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주식회사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나상돈(기소), 류경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황창하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고정41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¹⁾

가. 낙찰자,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 부존재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도 양형부당의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법원의 직권판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더라도 이 부분 직권파기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과장 B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직원 D과의 합의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해 온 점, D 또한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인 투찰가격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C의 입장에서는 자진신고를 통해 유리한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D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C 사이에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가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경쟁제한성 부존재

① 이 사건 각 입찰에는 피고인과 C 외에도 E, F, G(각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등 3개의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② 실제 위 업체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범죄일람표 순번 4 입찰을 제외한 나머지 각 입찰에 참여하였던 점, ③ C는 이 사건 각 입찰을 낙찰받을 의사 및 이행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실질적인 경쟁자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범죄일람표 각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마다 그 종료시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그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22. 3. 8.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 전에 종료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행위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각 항소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각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 아래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원심이 상세하게 실시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²⁾.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훈 _____

 판사 김상훈 _____

 판사 조성필 _____

2)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을 처분사유로 삼아 내려진 국가철도공단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다투는 관련 행정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595호) 및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사건(서울고등법원 2021누37580호)에서도, 피고인의 담합합의 및 경쟁제한성이 각 존재한다는 판결이 각 선고, 확정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4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주식회사
검 사 나상돈(기소), 김원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황창하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대표이사 B,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는 철도용 신호기기,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은 피고인 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 회사의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함)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F은 D의 과장 내지 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D의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사업자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초사실

자동폐색제어장치란 궤도회로를 이용하여 열차의 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폐색 구간(폐색이란 열차의 충돌 또는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구간에 2개 이상의 열차가 동시에 진입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일정한 거리마다 경계를 두어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된 각 구간을 폐색구간이라 함)으로의 진입 가부를 제어하는 장치이다.

G공단은 신규 노선 건설 및 기존 노선 고속화·복선화 사업에 필요한 자동폐색제어장치를 구매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왔는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 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의 과장 C은 2015. 5. 20.경 G공단에서 'H' 입찰 공고를 하자 이를 보고 불상지에서 D의 과장 F에게 연락하여 'A가 낙찰받을 수 있게 D가 높은 투찰 가격으로 입찰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과장 C은 2015. 6. 2.경 투찰가격 1,020,000,000원으로, D의 과장 F은 투찰가격 1,070,000,000원으로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



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0.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사본, 유관기관 고발, 수사의뢰서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1. 국가철도공단 공문 및 첨부자료(D 입찰관련 서류일체)

1. 심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입찰 담합을 한 바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의 과장 C이 D의 과장 F에게 연락하여 'A가 낙찰받을 수 있게 D가 높은 투찰 가격으로 입찰해 달라'고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D는 전자연동장치와 AF케도회로장치를 주력으로 취급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이전인 2012년에 있었던 'J' 입찰에서 낙찰받아 납품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549면). F은 위 회사에서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과장 C과



업무적,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처음 것은 C이 입찰이 나왔다면 도와달라고 해서 했다', '이후에도 C과 수시로 자동폐색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찰 정보를 공유하였는데, 자동폐색제어장치의 입찰공고에 관하여는 C이 입찰공고를 알려주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로 인식하였다', '자동폐색제어장치는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도 아니고 매출에도 관련이 없다 보니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냥 투찰을 했다', '포기하려고 일부러 높은 투찰가격을 적어내었다', '낙찰받을 의지가 없었다', '피고인 회사가 단독을찰하여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정보는 사후에 공개되어 C도 D의 투찰 사실을 알았으나, 이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길래 C이 자동폐색제어장치의 입찰공고를 알려주는 것을 계속 도와달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증인 F은 검찰에서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입찰공고일인 2015. 5. 20. 무렵 피고인 회사의 C으로부터 도와달라고 연락을 받았고 A가 낙찰받을 수 있게 높은 투찰가격으로 입찰해 달라고 부탁받아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증거기록 제488, 490면),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입찰공고 당시에도 C으로부터 공고 사실을 전해들었는데, 자동폐색제어장치는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아님에도 입찰공고 사실을 알려주기에 들러리 입찰을 해 달라는 의미로 생각하였다. 이전에는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C이 입찰공고 사실을 알려준 적도 없었다'(증거기록 제492면),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입찰 당시에는 C이 이전 3건의 입찰에 비하여 투찰율을 5% 정도 낮춰달라고 부탁하여 더 낮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증거기록 제495면)고 진술하였다.

○ 이와 같이 F은 C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높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



있음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매번 명시적인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입찰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D가 생산하지 않는 자동폐색제어장치의 입찰공고까지 알려주기에 같은 부탁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사후 입찰정보가 공개되어 C도 D의 입찰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여 더욱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 나아가 실제로 낙찰받을 의사 없이 입찰에 참여하였음도 분명히 하고 있다.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입찰에 있어서는 피고인 회사가 1순위 입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에 따라 적격심사에서 결격 처리되고 최종적으로 2순위 입찰자였던 D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D는 제작완료 전까지 필요한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입찰에 따른 납품을 마쳤다. 이는 실제로 D가 낙찰받을 의사 없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의 C 과장은 D의 F과 공동으로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음이 인정된다. 두 사람이 투찰가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데 있어 반드시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누군가 낙찰자가 되도록 하자'는 내용의 합의도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데 해당한다.

2.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합의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8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에서 2022. 2. 17.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상고도 대법원 2022두38205 시정명령및과징



금납부명령취소 사건에서 2022. 6. 3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행위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각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마다 그 종료 시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그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22. 3. 8.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 전에 종료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행위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포괄범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므로,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로 인한 위 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의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종의 입찰에 있어 경쟁제한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쟁제한효과가 지속되었는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위법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공소시효는 최종 실행행위가 종료한 2018. 11. 15.부터 진행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본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지숙 _____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1-31

범 죄 일 랑 표

순번	공고명	공고일	개찰일	업체	투찰일시	투찰가격 (원)	낙찰자	범행방법
1	H	2015. 5.20.	2015. 6.2.	A	2015.6.2. 13:29:41	1,020,000,000	A	A의 과장 C이 D의 과장 F에게 ‘A가 낙찰받을 수 있게 D가 높은 투찰 가격으로 입찰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F은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등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D	2015.6.2. 13:19:57	1,070,000,000		
2	K	2016. 5.17.	2016. 5.26.	A	2016.5.26. 12:58:19	1,052,700,000	A	
				D	2016.5.26. 10:28:31	1,060,000,000		
3	L	2016. 6.2.	2016. 6.10.	A	2016.6.10. 13:29:45	1,180,352,000	A	
				D	2016.6.10. 13:03:33	1,353,000,000		
4	M	2016. 6.4.	2016. 6.14.	A	2016.6.14. 13:20:09	368,935,000	A	
				D	2016.6.14. 13:20:29	398,000,000		
5	N	2017. 2.28.	2017. 3.14.	A	2017.3.14. 13:06:42	808,000,000	D ¹⁾	
				D	2017.3.14. 13:01:14	827,000,000		
6	O	2017. 5.12.	2017. 5.23.	A	2017.5.23. 11:51:52	637,000,000	A	
				D	2017.5.23. 13:02:54	651,900,000		
7	P	2017. 5.30.	2017. 6.8.	A	2017.6.8. 13:35:05	630,000,000	A	
				D	2017.6.8. 11:06:05	682,500,000		
8	Q	2018. 11.7.	2018. 11.15.	A	2018.11.15. 13:04:46	776,200,000	A	
				D	2018.11.15. 10:41:18	791,604,000		

1) A가 1순위 입찰자로 선정되었으나 2017. 3. 15.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에 따라 적격심사에서 결격 처리되었고, 2순위 입찰자였던 D가 낙찰자로 결정됨